

문서 번호	
최종 개정일	
담당 부서	

다원 협력사 행동규범

DAWON

목 차

서문	3
인권경영	3
안전보건	4
환경경영	5
윤리경영	6
경영시스템	7

서문

(주)다원은 인간중시, 품질 제일, 고객중시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인권, 안전, 환경, 윤리, 경영시스템 5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합니다.

‘(주)다원 협력사 행동규범’은 인권, 안전, 환경, 윤리, 경영시스템 5가지 분야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고,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와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주)다원이 협력사에 요구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RBA 행동규범과 기타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본 행동규범과 현지 법규의 내용이 상충할 시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문

[인권경영]

협력사는 모든 형태의 근로자(계약직, 임시근로자, 인턴 등)에게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보호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1) 강제노동 금지

모든 근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 근로를 해서는 안 되며 모든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 강요, 강제, 납치, 사기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이동, 채용, 전근시키는 등의 모든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2) 아동노동 금지

협력사의 아동 고용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아동’은 만 15세 미만 또는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 가능한 최저연령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법정 고용 최저연령보다 높은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초과근무, 야간근무 포함)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3)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제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에 고지하며, 자발적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4) 근로조건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위생적인 근무환경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며, 과중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 근로시간의 준수

협력사는 관련 적용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도록 합니다.

6) 차별금지/다양성 존중

협력사는 근로자들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및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7) 결사의 자유보장

협력사는 근로자들이 근무조건 및 경영방침에 대해 경영진과 자유롭게 의사소통 하여 근로자들의 생각 및 우려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및 해외 협력사는 현지 국가의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조합 등을 조직 및 가입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근로자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8) 지역주민 및 토착민 권리보장

협력회사는 사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고, 토착민들과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협력사는 지속적인 품질 유지와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해 안전보건을 보장하는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하위 협력사와 협업하여 잠재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산업안전

협력사는 위험요인에 잠재적으로 노출된 근로자들을 위해 가능성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 예방정비와 안전한 작업 절차, 지속적인 보건 및 안전교육을 통해 잠재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잠재위해요소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2) 비상사태 대응방안

협력사는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대응, 후속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

일을 갖추고,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 화재감지 및 소화장비 확보, 탈출가능한 출구시설, 복구계획 등의 절차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3) 산업재해 및 질병

협력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보고를 장려하고, 상해질병을 분류하고 기록하며, 필요한 의료 처치를 제공하고, 각 사례를 조사하여 원인을 제거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업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기계설비의 안전유지

협력사는 생산 및 기타 기계설비의 안전 위해요소를 평가해야 합니다. 상해 위험이 있을 경우, 물리적 보호장비, 연동 장치, 안전장치, 방호벽을 제공하고 해당 설비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5) 위생 및 시설제공

협력사는 직원들에게 청결한 화장실, 식수, 위생적인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 식당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숙소는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며, 적절한 비상 출구, 적절한 조명, 난방 및 환기시설, 개인물품 보관함, 합리적 수준의 출입 권한을 부여하여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6) 안전보건 교육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하며, 모든 근로자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환경경영]

협력사는 환경에 대한 책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제조공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와 폐기, 산업용수 관리와 재사용, 온실가스 및 대기배출물질 통제 등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인허가 보고

협력사에게 요구되는 모든 환경관련 인허가(예: 배출/방지시설, 설치/운영/변경신고 등)를 취득, 유지하고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2) 오염방지 및 자원 보존

협력사는 생산프로세스 개선, 유지관리 강화, 설비공정의 변경, 원료대체, 재사용 및 재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오염물질 및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물, 화석연료 등의 천연 자원은 아껴서 사용하도록 권장됩니다.

3) 화학물질 관리

협력사는 사업 운영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하며, 관련된 모든 법규와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4) 폐수 및 폐기물 관리

협력사는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수를 관련법규와 규정상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하며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수를 배출하기에 앞서 이를 식별, 감시, 통제,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 및 폐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대기배출 관리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현황은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합니다.

6)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관리

협력사는 전사 및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기록해야 하며,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윤리경영]

협력사의 모든 경영활동은 윤리와 준법 성실을 기반으로 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모든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들이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등을 마련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청렴 및 부당이익 금지

협력사는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행위, 부당이득 및 횡령 등을 일체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거나 수락해서도 안 됩니다. 이에 대한 감시 및 단속 절차를 이행하여 반 부패 법령 자율 준수를 실천해야 합니다.

2) 정보공개

협력사의 노동, 보건과 안전, 환경관리 실태, 사업활동, 구조, 재무현황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공급망 내 관련 분야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 위조나 부실표기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3) 지적재산

협력사는 지적 재산을 존중해야 하고,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주)다원 및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보호

협력사는 업무상 관련된 모든 개인 정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등에 있어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5) 이해상충 방지

구성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조직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충돌된 경우 조직의 이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 또는 타인이 사적이익을 얻음으로써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등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6) 내부 고발자 보호

협력사는 직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익명성 및 신원보호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관련절차를 공지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된 물제들에 대해 공정하게 알아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7) 정보보호

협력사는 사업정보 및 기술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정보자산을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자산의 공개여부 및 범위는 관련 법규 및 사규, 회사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기밀정보를 기반으로 주식을 거래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8) 위조부품

협력사는 납품 제품에 위조 부품 및 자재가 유입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에 적합한 프로세스를 개발, 구현 및 유지해야 합니다.

9) 수출제한 및 경제재제 준수

회사의 상품,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술의 수출 또는 재수출에 대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한다. 특정 국가, 지역, 기업 또는 단체 및 개인과 관련된 거래에 적용되는 제한도 포함합니다.

10) 책임있는 자재 구매

협력사는 제품에 포함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심각한 인권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사회, 환경적 이슈를 점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1) 분쟁광물 사용금지

협력사는 원재료의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인권침해, 윤리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이슈와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하거나 대외 인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수단을 통해 획득한 원자재 사용에 대한 금지방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공급망 원자재의 원산지 및 공급선에 대한 보증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시스템]

협력사는 본 규범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 및 규정, 고객 요구사항의 준수를 위해 자체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본 규범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1) 기업의 준수 의지

경영진이 승인한 기업의 준수 의지 및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 정책 성명서를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합니다.

2)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경영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 대표이사는 경영시스템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3) 법률 및 고객 요구사항 대응

본 규범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법률, 규정 및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모니터링하여 경영시스템에 반영해야 합니다.

4) 리스크 관리

협력사의 사업운영과 관련된 환경, 산업안전보건, 인권 및 노동 관행, 윤리적 위험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파악된 위험을 통제 및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개선목표

협력사의 사회, 환경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목표 및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목표대비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6) 교육

협력사의 정책, 절차, 개선목표를 이행하고 해당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7) 커뮤니케이션

협력사는 본 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계획 및 성과 등을 임직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8) 감사 및 평가

법률 및 규제요건, 본 규범의 내용, 현지 관련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10) 시정조치 절차

내 외부 평가 및 점검, 조사, 검토를 통해 확인된 미비점을 적절한 시간 내에 시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1) 문서화 및 기록

협력사는 관련 법규 준수와 회사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기밀 유지를 하여야 하며, 해당 문서와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12) 공급업체 책임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에게도 본 규범을 전달하고 준수를 요구하며, 이를 준수하는지 감독하는 프로세스를 갖춰야 합니다.

[행동규범 준수]

(주)다원의 협력사는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들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본 행동규범 준수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다원은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목표설정, 계획수립, 보완 등 활동을 통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